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09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2
2.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 개정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구성요건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u>수치심</u>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 ----- -----불쾌감----- ----- ----- ----- -----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현행	개정안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 -----불쾌감-----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 ----- ----- ----- ----- -----불쾌감-----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현행	개정안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략)	협박·강요) ① ----- ~~---불쾌감---~~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과 관련하여, ‘수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피해 감정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수치심’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이를 수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 ‘성적 수치심’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

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14조의 ‘성적 수치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²⁾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수치심’과 ‘불쾌감’이 대체가능한 용어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의 개념에 ‘불쾌감’이 포섭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법률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성적 수치심’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존에 판례 등이 누적된 상황이므로, 용어 변경으로 실무상 적용기준이나 범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용어 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2)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153 결정

2.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³⁾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제9조제1항의 죄</u> 3. 4. (생략)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제9조제1항의---</u> 3. 4. (현행과 같음)

3)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서효원,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2016. 12), 3쪽]

□ 개정안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⁴⁾의 경우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에 기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인이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 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있고,⁵⁾ 검사의 소추권 행사·소추 의무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보다 확실하게 행사·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시효를 배제할 수도 있음.⁶⁾

4)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헌법재판소 1995. 7. 21. 95헌마8, 9, 16, 17(병합) 결정

6) 강동범,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8호 (2018. 3), 314쪽

□ 개정안에 관하여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 해당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 우선,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피해를 수인하라는 친족의 압력 등 친족관계의 특수성에 기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들이 검사의 소추권 행사·소추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나이, 신체장애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 제도를 두고 있고⁸⁾, 현행법 제21조

7)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함 [헌법재판소 1995. 7. 21. 95헌마8 등 결정].

8)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상을 ‘강간 등 살인죄’ 등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로 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할 경우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에도 시효 정지, 연장, 배제 제도가 마련된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나이, 범죄 유형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연장 또는 배제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개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3

-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注: 강간등 살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注: 강간등 살인)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